

EU의 디지털세(Digital Tax)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구미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임유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구미팀 연구원 (yjlim@kiep.go.kr, Tel: 044-414-1064)

차례

1. EU의 디지털세 발표 및 배경
2. EU 디지털세 주요 내용
3. 평가 및 향후 전망

주요 내용

- ▶ 2018년 3월 21일 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디지털세(Digital Tax)”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발표하면서 공정과세 원칙을 강조함.
 - 이 법안은 크게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와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로 구분됨.
 - 비전통적인 디지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인세 체계로 디지털 기업들의 과세소득 산정에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디지털 기업들은 전통적인 제조기업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 ▶ EU 집행위의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는 기존의 법인세 제도와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비즈니스 모델과의 괴리를 지적하며,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한 법인세 법안을 제시함.
 - 이 법안은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존 법인세 체계에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요 디지털 사업장(significant digital presence)’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확대함.
 - EU 역내에 위치한 주요 디지털 사업장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 공급 수익, 사용자 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계약건수 등을 기준으로 확대된 과세대상에 디지털세가 부과됨.
 - 회원국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의 국내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해야 함.
- ▶ 한편 EU 집행위는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까지 공정과세 차원에서 3% 세율로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 Tax)를 부과할 계획임.
 - 디지털 서비스세 과세대상 기업은 연간 총수익이 7억 5천만 유로를 상회하고 EU 역내에서 5천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임.
 - EU 집행위에 따르면,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를 통해 연간 50억 유로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 디지털세를 통해 조세회피와 불공정 정부보조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의사를 밝힌 EU 집행위와 달리, 일부 회원국들은 물론 OECD와 같은 국제기구도 우려를 표현하고 있어 실제 발효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의 발효를 위해서는 28개 EU 회원국 모두 동의해야 하지만, EU 집행위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디지털세 도입을 강하게 찬성하는 반면,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부문에서 어떠한 협상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발효시기가 결정될 것임.
- ▶ EU의 디지털세 주요 내용은 글로벌 공조를 위한 G20 및 OECD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 입장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향후 양국간 관련 분야의 정부 및 전문가 간 협의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1. EU의 디지털세 발표 및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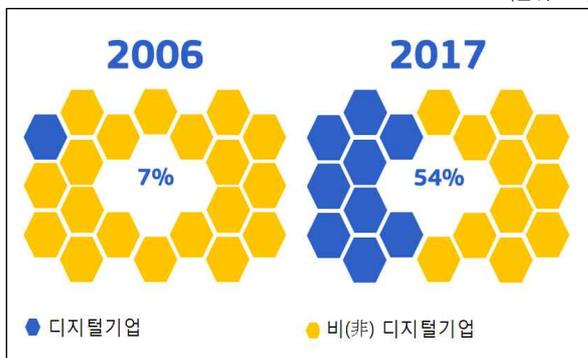
■ 2018년 3월 21일 EU 집행위는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①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 ②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 EU 집행위원회(이하 EU 집행위)가 제안한 디지털세 과세대상은 EU 역내에서 온라인 사업으로 7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거나,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거나, 또는 3,000개 이상의 온라인 비즈니스계약을 맺은 기업임.
 - 총 150개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이 과세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일명 GAFA)이 주요 타겟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EU 집행위는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전까지 임시로 전체 연간 수익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고 EU 역내에서 5천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서 3%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제안

■ 비전통적인 기업인 디지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EU 내에서도 디지털 기업의 수익 성장률이 기존 기업들을 크게 상회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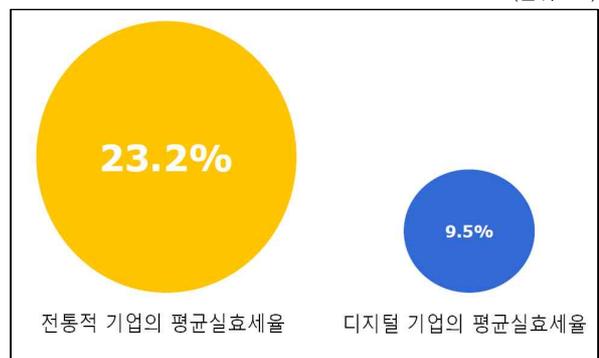
- 시가총액 기준 2006년 전 세계 상위 20대 기업 중 디지털기업의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2017년 54%로 급증함(그림 1 참고).
- 주요 디지털 기업들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4%로 다른 다국적기업의 매출액 증가율(0.2~3%)을 크게 상회함.²⁾
- EU 집행위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6년 전 세계 상위 5대 전자상거래 유통기업의 수익성장률은 연간 32%로, 같은 기간 연간 1% 성장에 그친 EU의 전체 유통부문과 크게 대비됨.

그림 1. 디지털기업과 비(非)디지털기업 시가총액 비중³⁾
(단위: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 "A Fair and Efficient Tax System in the European Union for the Digital Single Market," COM(2017) 547 final, p. 5.

그림 2. EU의 기업군별 평균실효세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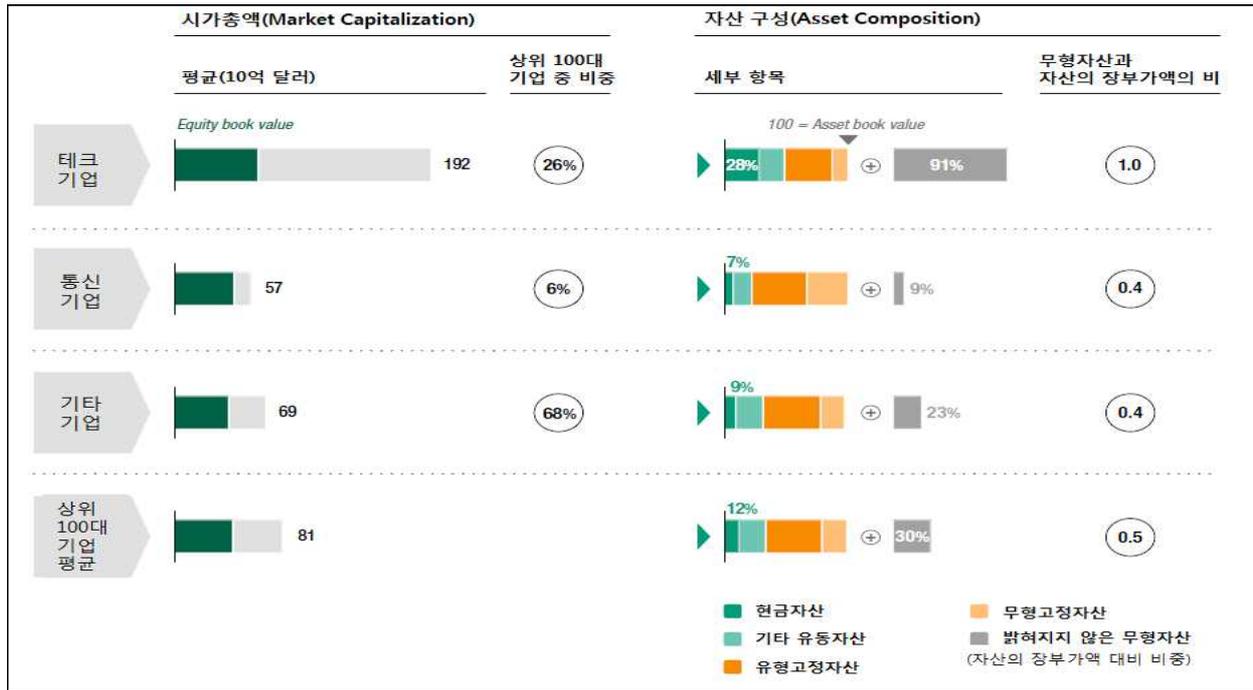


주: 본 수치는 글로벌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 "Time to establish a modern, fair and efficient taxation standard for the digital economy," COM(2018) 146 final, p. 5.

1) European Commission(2017), "A Fair and Efficient Tax System in the European Union for the Digital Single Market," COM(2017) 547 final.
2) European Commission(2018), "Impact Assessment," SWD(2018) 81 final.
3) 디지털, 테크(tech), IT 기업은 여러 보고서에서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만큼,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며, 인용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테크나, IT라는 용어를 사용함.

- EU 내 많은 사용자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바, 하루 평균 디지털 관련 사용 규모는 온라인상 8억 개의 동영상 시청, 4천 개의 사진 업로드, 1억 5천 만 개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게시물 업로드, 6억 5천만 번의 인터넷 검색 정도임.

그림 3. 다국적기업의 유형별 시가총액과 자산구성(상위 100대 기업 기준)



주: 1) UNCTAD에서 작성한 상위 100대 다국적기업(2015년 기준)을 대상으로 함. 단, 자산 구성에 대한 부분은 관련 재무정보가 보고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 (총 92개의 다국적기업이며, 이 중 테크기업 10개, 통신기업 8개, 기타 기업 74개임.)
 2) 밝혀지지 않은 무형자산은 시가총액(또는 기업가치)과 자기자본의 장부가액의 차로 추정하며, 브랜드 가치, 지적재산 등을 의미함.
 자료: UNCTAD(2017),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p. 163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디지털 기업이 전통적인 기업들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음에 따라 조세형평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세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번 디지털세 부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전통적인 제조기업들이 국제적으로 23.2%의 평균실효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테크 기업들은 9.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그림 2 참고).⁴⁾
-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중심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곳에서 순수익에 대해 과세함이 원칙임.
- 그러나 디지털 기업은 고정사업장 대신 무형자산, 데이터, 지식 등에 의존하는 新비즈니스 모델에 입각하여 운영되어 현 조세체계 기준으로는 과세대상을 측정하기 어려움(글상자 1 참고).
 - 디지털 기업은 고정사업장이 부재한 국가에서 무형자산(특히 및 알고리즘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
 - UNCTAD(2017)에 따르면 테크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은 91%로, 상위 100대 기업 평균인 30%를 상회하고 있는 바, 기존의 법인세 제도를 운영하는 데 제한이 있음(그림 3 참고).⁵⁾

4) European Commission(2018), "Time to establish a modern, fair and efficient taxation standard for the digital economy," COM(2018) 146 final.

글상자 1. 신(新)비즈니스 모델 예

- ① 온라인 유통시장 모델(Online retailer model)
 -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제공하여, 거래수수료 등으로 수익 창출
 - 예) 아마존(Amazon), 알리바바(Alibaba)
- ② 소셜 미디어 모델(Social media model)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타겟 마케팅 광고를 제공함으로써 광고 수입으로 수익 창출
 - 예) 페이스북(Facebook)
- ③ 구독 모델(Subscription model)
 - 비디오, 음악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구독자에게 구독료를 받음으로써 수익 창출
 - 예) 넷플릭스(Netflix), 스포티파이(Spotify)
- ④ 공유 플랫폼 모델(Collaborative platform model)
 - 방, 자동차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고 거래수수료로 수익 창출
 - 예)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 "A Fair and Efficient Tax System in the European Union for the Digital Single Market," COM(2017) 547 final, p. 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EU 집행위는 미국계 디지털 기업들이 불공정 과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통해 공정 과세와 조세회피 방지에 노력해왔음(글상자 2 참고).

글상자 2. EU 집행위원회의 주요 디지털 기업 과징금 부과 논의

- ① 구글(Google) 과세
 - 유럽재정위기 기간 중 주요 EU 회원국들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가 매출액 대비 현저히 낮음을 비판함.
 - 프랑스: 2010년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은 온라인 광고세로 지칭되는 일명 '구글세' 도입을 추진함. 이후 2016년 프랑스 정부는 구글 파리지사에게 압수수색 및 세무조사를 실시
 - 이탈리아: 2017년 5월 구글에 대해 지난 10여 년 동안 미납한 세금 3억 6천만 유로를 추가로 받기로 합의
 - 영국: 2015년 4월 우회이익세를 도입하고 연매출 1천만 파운드 이상 다국적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국외이전 소득에 대해 25%의 세율 적용
- ② 애플(Apple) 과세
 - 2016년 중 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에 위치한 애플에 과징금 130억 유로를 부과함.
 - 아일랜드 정부는 낮은 법인세율에 근거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EU 집행위원회는 경쟁정책상의 불법정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이나, 2003년 애플에 적용된 실효세율은 1% 미만으로 2014년에는 0.005%까지 낮아짐.
- ③ 아마존(Amazon) 과세
 - 2017년 10월 EU 집행위원회는 아마존에 대한 불법특혜를 이유로 룩셈부르크에 총 2억 5천만 유로의 세금을 징수하라고 결정
 -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아마존이 다른 기업과 비교할 때 훨씬 적은 세금을 내도록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임.
 -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룩셈부르크의 특혜로 인해 아마존 수익의 3/4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평가

자료: 주요 언론기사의 보도 정리 및 요약.

2. EU 디지털세 주요 내용

가. 법인세 개혁을 통한 EU 디지털세

■ EU 집행위는 기존 법인세 제도와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비즈니스 모델과의 괴리를 지적하며,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한 법인세 법안을 제시함.⁶⁾

-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적절한 과세 방안에 대한 논의는 OECD, G20 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EU 집행위가 디지털세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함.
- 지난 2017년 3월 G20은 OECD에 디지털화의 과세 방안에 대한 시사점 관련 보고서를 2018년 4월 G20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음.
- 이 법안은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존 법인세 체계에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요 디지털 사업장(significant digital presence)'을 추가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확대함.

■ [과세대상] 이 법안은 EU 역내에 위치한 주요 디지털 사업장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 공급 수익, 사용자 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계약건수 등을 기준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임.⁷⁾

- EU 내 설립된 기업 및 EU 회원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지 않은 역외국가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EU 회원국에 주요 디지털 시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이 됨.
- EU 집행위는 ① EU 역내에서 온라인 사업으로 7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거나 ②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거나 ③ 3,000개 이상의 온라인 비즈니스계약을 맺은 기업에 과세할 계획임.
- 본 기준은 주요 디지털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요소로, 중소기업에 조세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EU 집행위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표 1. 과세기준에 대한 주요 정의

	정의
총수익 (Proportion of total revenues)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전 세계 사용자의 디지털 장치(digital device) 사용 횟수에 비례하여 결정
사용자(User)	사용자는 회원국 내에서 과세기간에 디지털 서비스를 공급받는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하는 자로서 회원국에 거주하는 사람(자연인)
온라인 비즈니스 계약	비즈니스 계약이 완료된 건수로 측정되며, 계약을 한 사용자가 회원국에 거주하거나 제3국에 거주 하더라도 회원국에 고정사업장(Permanent Presence)이 있을 경우 과세대상임.
사용자의 장치 위치	사용자의 장치(Device)가 사용된 회원국은 장치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또는 장치의 위치정보 등으로 결정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laying down rules relating to the corporate taxation of a significant digital presence," COM(2018) 147 final, p. 16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6) European Commission(2018),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laying down rules relating to the corporate taxation of a significant digital presence," COM(2018) 147 final.

7) 디지털 서비스는 인터넷 혹은 전자적 기반의 네트워크상 공급되는 서비스로, 소프트웨어와 같이 디지털화된 상품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 웹사이트, 데이터 전송, 판매를 위한 온라인 마켓 플랫폼 제공 등을 의미하며,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단순 상품(예: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서의 중고차)은 디지털 서비스에 포함하지 않음.

■ [귀속이익]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Profit)은 해당 회원국별 법인세 제도의 적용을 받음.

- 법인에 귀속되는 이익은 주요 디지털 시설에서 수행되는 경제적 주요 활동(Economically significant activities)으로 결정되며, 경제적 주요 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사용자 데이터(User-level data)의 수집(Collection), 저장(Storage), 처리(Processing), 분석(Analysis), 배치(Deployment), 판매(Sale)
 - ②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의 수집(Collection), 저장(Storage), 처리(Processing), 표시(Display)
 - ③ 온라인상 광고공간(Online advertising space) 판매
 - ④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제3자 제작 콘텐츠 이용
 - ⑤ ①~④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디지털 서비스의 공급
- 귀속이익은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방식으로 산정할 예정이며, 분할 요인으로 회원국의 사용자 수와 회원국당 수집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마케팅 등의 지출이 포함될 것임.⁸⁾

■ EU 회원국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의 국내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해야 함.⁹⁾

- 본 법안 발효 이후 5년차에 EU 집행위는 디지털세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EU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나.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 Tax)

■ EU 차원의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까지 공정과세 차원에서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를 일괄 부과하는 지침(Directive)이 함께 제시됨.¹⁰⁾

- EU 집행위는 OECD 및 주요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조세회피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나 국가간 협력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EU 차원의 디지털세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데 적극적임.
 - OECD는 2015년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화 및 관련 산업이 국제조세에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G20 정상회의 및 장관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조하였으나, 아직 글로벌 합의는 부재한 상황임.
- EU 기능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13조 및 제5조 3항에 근거하여 EU 집행위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EU 차원의 법인세 도입 시까지 임시로 디지털 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 Tax)를 부과함.¹¹⁾

8) 이익분할법은 자산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무형자산 등 가치를 산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 활용됨.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사)한국국제조세협회(2012)의 『무형자산이 포함된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마련』을 참고.

9) 회원국은 본 법안을 법(Law), 지침(Directive), 행정관리조항(Administrative provisions) 등 법 형태와 상관없이 국내법으로 입안할 수 있음.

10) European Commission(2018),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the common system of a digital services tax on revenues resulting from the provision of certain digital services," COM(2018) 148 final.

11) TFEU Article 5(3) The Union may take initiatives to ensure coordination of Member States' social policies.
TFEU Article 113 The Council shall, acting unanimously in accordance with a special legislative procedure and after consulting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dopt provisions for the harmonisation of legislation concerning

■ [과세대상 기업 및 수익원] EU 집행위는 연간 전체 수익(revenue)이 7억 5천만 유로를 상회하고 동시에 EU 역내에서 5천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 3%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함.¹²⁾

- 이 지침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원은 다음과 같음.

- ① 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및 영리행위(예를 들면,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단, 단순한 지급결제는 과세부과 대상 수익에서 제외
- ②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와 기타 이용자들이 서로 연계되고, 직접적으로 공급된 상품과 서비스에서 기인한 수익(예를 들면, 에어비앤비나 우버가 이에 해당)
- ③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사용자와 그 사용자의 활동에서 기인한 정보의 이동

- 이 지침의 대상이 되는 기업 중 유로화 이외의 통화로 수익이 창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로화로 환산하여 수익을 공고해야 함.

-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3% 세율의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로 연간 약 50억 유로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과세 관할권 결정] 과세대상 수익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조세집행을 할 국가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의 위치(IP 주소)에 따라 결정됨.

- [과세대상 수익원 중 ①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사용한 사용자의 디지털 기기가 위치한 EU 역내 회원국
- [과세대상 수익원 중 ②의 경우] 사용자 간 상품 및 서비스 거래가 최종 완료된 시점의 디지털 기기가 위치한, 또는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접속할 때 위치한 EU 회원국
- [과세대상 수익원 중 ③의 경우] EU 회원국별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자 수에 따라 과세대상 수익을 회원국 별로 배분하고, 각국이 이를 집행

■ [과세대상자의 의무] 신고의무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회원국 조세당국에 다음의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그 정보내용에 변경이 있을 시 즉시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함.

- 기업명, 우편번호, 온라인 주소, 국별 납세번호, 대표자명, 디지털 서비스세를 납부해야 할 국가명, 은행계좌 정보(IBAN) 등임.
- 과세대상 기업은 과세대상기간 종료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세금신고를 완료해야 함.
 - 세금신고 시 해당 기업은 전 세계 수익과 과세대상 수익이 명시되어야 하며, 조세당국은 자국 통화로 세금신고를 요구할 수 있음.
- EU 회원국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세와 관련하여 관할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EU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turnover taxes, excise duties and other forms of indirect taxation to the extent that such harmonisation is necessary to ensure the establishment and the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and to avoid distortion of competition.

12)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집행위원장은 DST의 부과대상이 되는 기업이 120~150개이며, 이 중 절반이 미국 기업, 1/3이 유럽 기업인 것으로 발표함. Press conference of Pierre Moscovici(21 March 2018).

다.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대한 권고

■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제3국과 맺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 Treaties)이 이번에 제안된 디지털세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권고함.¹³⁾

- 이 권고안에 따르면 회원국은 이중과세조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해야 함.
 - 특정 국가나 사법관할권에서 규정한 고정사업장 개념에 주요 디지털 사업장(digital presence)을 반영하여 새롭게 정의되어야 함.
 - 어떻게 과세대상 이익이 주요 디지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함.
- EU 회원국은 디지털세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조화를 위해 시행된 국내 조치와 변경사항을 EU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3. 평가 및 향후 전망

■ EU의 디지털세 및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은 EU 차원의 법인세 개혁과 회원국별 경제구조 및 성장모델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국 간 합의에 이르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표 2 참고).

- EU 회원국 중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이번 EU의 디지털세 및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음.¹⁴⁾

표 2. EU 주요 회원국별 디지털세 입장

구분	주요 내용	
찬성	프랑스	디지털세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과 함께 디지털세에 찬성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디지털세에 찬성
	포르투갈	특별한 입장표명 부재
	영국	지식국들과 함께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
	헝가리	국제적인 협력을 선호하면서도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찬성
결정을 못한 상황	폴란드	디지털세가 EU 예산에 기여하고 EU의 재정적 지원을 담보해줄 것으로 기대
	독일	디지털세에 적극적이었던 독일은 디지털세가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체코	디지털세가 어떻게 조세혜택에 영향을 줄지 우려
	루마니아	특별한 입장표명 부재
	슬로바키아	디지털세가 동유럽 국가들보다 서유럽 국가들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
	슬로베니아	조세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EU 집행위의 제안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필요 강조
	스웨덴	디지털세 부과에 따른 반발을 우려
	핀란드	특별한 입장표명 부재
	에스토니아	현행 조세체제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라트비아	현행 조세체제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13) European Commission(2018), "Commission Recommendation relating to the corporate taxation of a significant digital presence," COM(2018) 1650 final.

14)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이었으나, 디지털세 도입이 자국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디지털세에 대한 입장이 다소 불분명해짐. Politico EU(2018. 3. 22), "France's lonely crusade for a 'digital tax'."

표 2. 계속

구분	주요 내용	
결정을 못한 상황	리투아니아	형행 조세체제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크로아티아	현행 조세체제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중립	오스트리아	중립(2018년 하반기 EU 의장국)
	불가리아	중립(2018년 상반기 EU 의장국)
반대	아일랜드	디지털세 도입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OECD 및 G20 회의를 통한 접근 지지
	네덜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와 함께 반대 입장
	벨기에	특별한 입장표명 부재
	덴마크	특별한 입장표명 부재
	그리스	다국적기업들로부터 추가적인 투자 희망

자료: Politico EU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검색일: 2018. 4. 9).¹⁵⁾

- 프랑스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회원국별로 상이한 법인세율이 EU 역내에서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강조함(표 2 참고).
 - * EU의 평균 법인세율은 21.9%이며, 몰타가 35.00%로 가장 높고, 헝가리가 9.00%로 가장 낮음(표 3 참고).
-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 도입 시까지 임시로 부과되는 디지털 서비스세는 프랑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EU의 디지털세 부과 계획과 별도로 그동안 디지털 서비스세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영국은 최근 영국정부 차원의 디지털 수익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¹⁶⁾
- 반면 아일랜드는 회원국의 조세재정 주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음.
 - 아일랜드는 자국에 위치한 디지털 기업의 조세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경제성장이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함.
 - 투자매력을 높이기 위한 외국투자기업 조세감면 혜택은 불공정 정부보조나 조세왜곡이 아닌 회원국 재량적 주권임을 강조함.
- 일부에서는 3%의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율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키프로스가 반대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함.

표 3. EU 회원국별 법인세율(2018년 현재)

(단위: %)

국가	법인세율	국가	법인세율
몰타	35.00	에스토니아	20.00
벨기에	34.00	핀란드	20.00
프랑스	33.30	체코	19.00
독일	29.79	폴란드	19.00
그리스	29.00	슬로베니아	19.00
룩셈부르크	27.08	영국	19.00
오스트리아	25.00	크로아티아	18.00
네덜란드	25.00	루마니아	16.00
스페인	25.00	라트비아	15.00
이탈리아	24.00	리투아니아	15.00
덴마크	22.00	키프로스	12.50
스웨덴	22.00	아일랜드	12.50
포르투갈	21.00	불가리아	10.00
슬로바키아	21.00	헝가리	9.00

자료: Trading Economics.

15) <https://www.politico.eu/article/europe-digital-tax-map-where-countries-stand-analysis-deep-divisions/>.

16) Bloomberg(2018. 3. 16), "The EU Digital Tax is Back and as Wrong as Ever."

- EU 집행위가 제안한 디지털 서비스세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요구되는 만큼 디지털세 도입을 둘러싼 국가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문에서 전략적 협상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발효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아일랜드의 파스칼 도노후(Paschal Donohoe) 재무장관은 아일랜드 정부가 EU의 디지털 과세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여전히 OECD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협력을 강조함.¹⁷⁾

■ 조세회피 및 공정조세를 위한 국제 간 협력을 지원하는 OECD는 EU의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가 국제공조를 위한 국가간 협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미국은 EU가 미국의 특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비판함.

- OECD는 2018년 4월 중 디지털세와 관련하여 OECD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국가간 협의가 아직 부재한 상황에서 EU의 이번 제안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함.¹⁸⁾
- OECD는 이 보고서에서 국가 간 디지털 경제에 대한 입장이 서로 상이하며, 결과적으로 EU가 선제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 국가 간 조세협력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함.
-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디지털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국제공조의 움직임이 여전히 요원한 상황에서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은 공정과세 차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미국정부는 EU의 디지털세가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강화와 맞물려 EU-미국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함.¹⁹⁾
- 미국 재무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EU의 차별적인 조세집행, 특히 과세대상이 아닌 수익에 대한 EU의 과세결정에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더욱이 EU가 역내 디지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함.²⁰⁾
-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정부의 이런 비판에 유럽의 기업들도 이번 디지털세 과세대상이 되는 만큼 차별적인 조치가 아님을 강조함.

■ 한편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과세방침과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와 독일, 프랑스는 EU 회원국은 물론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은 EU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EU 역내에서의 디지털 관련 투자 위축을 경고함.
- 유럽의 주요 디지털 기업 및 은행연합은 EU 집행위원회의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가 기업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켜 사업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함.
- 독일 미디어 그룹인 Bertelsmann의 토마스 라베 회장은 온라인 광고를 포함한 3%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이중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함.²¹⁾
- 독일 정보통신산업협회인 Bitkom은 유럽 기업들이 이중과세의 부담에 노출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디지털

17) Davy Research(2018. 3. 26), "EU digital tax plans shelved for now."

18) OECD(2018),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Interim Report 2018*.

19) *Wall Street Journal*(2018. 3. 21), "Europe's Tax War on U.S. Tech."

20) U.S. Treasury Secretary 스티븐 므누신의 성명서 "Some of these companies are among the greatest contributors to U.S.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Imposing new and redundant tax burdens would inhibit growth and ultimately harm workers and consumers. I fully support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ddress broader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modern economy and to put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on a move sustainable footing."

21) *Financial Times*(2018. 3. 27), "Bertelsmann chief hits out at EU digital tax plan."

세는 기업들 간 형평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함.

- 유럽은행연합(EBF: European Banking Federation)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적인 합의 없이 EU가 일방적으로 디지털세 및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OECD 및 G20 회의를 통한 접근방식을 지지한다고 발표함.²²⁾

■ EU의 디지털세 주요 내용은 글로벌 공조를 위한 향후 G20 및 OECD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입장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 우리 정부는 2017년 G20 회의에서 국제적 정책공조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천명한 상황임.²³⁾
- 디지털 경제에 편승한 조세회피행위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OECD 및 G20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EU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패키지를 통해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부록 1 참고).
- 우리 정부는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을 명확히 했으나, 국제적인 논의 차원에서 OECD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관과 지속적인 의견 공유를 통해 우리의 정책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²⁴⁾
-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과세에 대한 장단기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국제적인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며, 관련 업계와 국제적 동향을 공유하는 것 외에 디지털세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은 없다고 발표함. KIEP

22) EBF(2018. 3. 21), "Banks deplore EU proposal for digital taxation."

23) 기재부 보도자료(2017. 8. 10), 「G20, 국제적 정책공조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차단한다 - G20 국제조세 개혁의 성과」.

24) 기재부 해명자료(2018. 4. 16), 「한국경제(가판) 「구글, 애플 겨냥 '디지털 稅' 검토」 제하 기사 관련」.

부록 1. EU의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패키지²⁵⁾

- 2016년 1월 EU 집행위원회는 EU 역내에서의 조세회피 방지, 조세투명성 제고, 공정경쟁 장려를 위한 조세 회피 방지 패키지(Anti Tax Avoidance Package)를 발표
 - 동 패키지는 조세회피 방지 지침, 조약남용 방지 실행을 위한 권고, 국별 보고서 자동교환 실행을 위한 지침, 효과적인 과세를 위한 대외전략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
- [조세회피방지 지침(ATAD: Anti Tax Avoidance Directive)] 공격적인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6가지 방안을 제시
 - 이자비용공제 제한, 기업 출국세, 스위치오버(switch-over) 제도,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규정(GAAR: General anti-abuse rule), CFC 제도, 혼성불일치 과세제도
 - 6개 방안 중 이자비용공제, CFC 제도, 혼성불일치는 OECD BEPS에서도 다루는 사안
 - [이자비용공제] 다음의 예외항목을 제외하고 이자비용은 최대 30%까지 공제를 허용
 - 100만 유로 미만의 이자비용, 은행 및 보험기관을 포함한 금융기관
 - [기업 출국세] 기업이 거주지 이전 또는 지점 및 고정사업장과 본사와의 자산이전 시 소재지국 또는 원거주국이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제안
 - 과세대상은 자산의 시가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최대 5년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
 - [스위치오버 제도] 저세율국에 위치한 기업의 배당소득과 자회사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면제 규정의 배제
 - EU의 저세율국 정의는 EU 회원국 법인세율의 40%에 미달하는 국가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인위적인 거래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CFC 제도] 저세율국에 위치한 비상장 자회사의 주요 소득을 모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도록 제안
 - 모회사에 적용되었을 유효세율의 40%에 미달하는 세율을 적용받은 자회사가 대상
 - [혼성불일치 과세제도] 혼성체(hybrid entity)와 혼성상품(hybrid instrument)에 대한 국가간 상이한 조세규정에서 기인한 이중비과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천지국에서만 공제를 허용하고, 과세소득에 미포함된 지급은 공제를 불허
- [조약남용 방지 실행을 위한 권고] EU는 OECD BEPS의 Action 6(조약남용) 및 Action 7(고정사업장)을 고려하여 회원국들에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
 - [주된 목적 테스트 규정 도입] 국가간 거래에 있어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목적으로 한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경우 조세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을 도입
 -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 및 배제조건 수정] 현 OECD 모델 조세협약에서 고정사업장의 정의와 배제규정이 조세회피에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OECD 모델 조세협약에서 고정사업장 조항을 반영하도록 개정을 권고
- [국별 보고서 자동교환 실행 지침] 이 법안은 OECD BEPS Action 13에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별 보고서의 신고대상자, 시기, 신고내용을 동일하게 반영
 - 국별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총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그룹에 대해 최종 모그룹법인이 위치한 거주지국의 조세당국에 신고
 - 신고의무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고하고, 각 회원국 조세당국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국별 보고서를 교환
 - 다국적기업의 조세관할 지역별 총수익, 세전이익/손실, 법인세 납부액, 유형자산 등이 포함된 재무정보와 각 지역별 현지거주법인의 주요 사업 등의 정보가 포함
- [효과적 과세를 위한 대외전략 커뮤니케이션] 단일시장인 EU가 바람직한 조세 거버넌스를 위해 제3국과 협력할 때 일관된 전략을 갖출 수 있도록 권고
 - EU는 바람직한 조세 거버넌스 기준에 맞지 않는 비(非)EU 회원국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

25)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ompany-tax/anti-tax-avoidance-package_en(검색일: 2018. 4. 2).